제 93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1월 0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78-07-21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	무단전출
노**	노** 1974-04-24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	무단전출
선**	선** 1962-10-0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	무단전출
손**	손** 1972-11-05	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28번길	무단전출
손**	손** 2005-04-21	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28번길	무단전출
손**	손** 2004-02-14	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28번길	무단전출
손**	손** 2003-02-07	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28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 충현 문의전화 : 032-560-4619)

2014년 12월 31일

청라2동장